

노인가구의 소득 원천

최 효 미*

I. 서론

의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조사에 따르면 1999년에는 6.9%에 지나지 않던 65세 이상 인구는 2006년에는 9.5%까지 증가했으며, 오는 2050년에는 38.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노년부양비¹⁾도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12.6에 불과하던 노년부양비는 2050년에는 7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아직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감당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시행된지 채 20년이 되지 않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고, 예전처럼 자식들로부터의 부양을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고령자들은 청장년에 비해 취업기회가 적고, 생계형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노인가구는 빈곤에 처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본고는 노인가구의 소득 원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노인가구가 직면한 문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노인가구의 정의

고령자 혹은 노인가구라고 할 때의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준은 ‘연령’이다. 그러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chm@kli.re.kr).

1)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이다.

나 고령자의 기준연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찾기 어렵다.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자를 고령자로 보고 있다. 또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고령자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계청의 인구추계조사는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가구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은 60세 이상일 때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책의 목표와 취지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여겨진다.

다만, 본고는 노인가구의 소득 원천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단독 혹은 1세대 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60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의 대상자이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편 단독가구와 1세대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이유는 2세대 이상의 가구의 경우 가구의 소득이 누구로부터 생긴 소득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이 가구단위로만 조사되고 있는 KLIPS의 경우 가구 전체의 금융소득은 알 수 있으나 그 소득원은 알 수가 없다. 또 예를 들어 은퇴한 가구주와 장성한 자녀가 한 가구에 같이 살 경우 장성한 자녀의 근로소득 등이 가구소득으로 합산되면서 노인가구의 소득을 과대평가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60세 이상 가구주 혼자 거주하고 있거나, 가구주가 60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만을 노인가구로 정의하여 분석한다.

〈표 1〉 노인가구 비중

(단위: 개, %)

	전체 가구수	노인가구수	
		가구수	비 중
1999(2차조사)	4,508	464	10.3
2000(3차조사)	4,266	494	11.6
2001(4차조사)	4,248	523	12.3
2002(5차조사)	4,298	569	13.2
2003(6차조사)	4,592	609	13.3
2004(7차조사)	4,762	641	13.5
2005(8차조사)	4,850	688	14.2

KLIPS에 나타난 노인가구의 비중은 <표 1>과 같다. 8차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14.2%인 688가구가 노인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Ⅲ. 노인가구의 소득 원천

KLIPS에서 조사되고 있는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 수급으로 인한 소득, 기타 소득²⁾ 등이며, 근로소득을 제외한 각각의 소득에 대해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와 가구주 배우자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를 묻는 문항들은 이전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령자 가구의 경우에는 이들 문항을 활용하기 어렵다. 다만 9차년도(2006년) 조사부터는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경제적 교류를 묻고 있으므로,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노인가구의 총소득

전체 가구의 총소득은 2004년에 평균 2천 997만 4천 원이었던데 반해, 노인가구의 총소득은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천 145만 3천 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단독 혹은 1세대 가구이면서 비노인가구인 경우의 평균 총소득은 2004년에 2천 233만 7천 원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보다는 낮았으나, 노인가구의 평균소득에 비해서는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노인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노인가구의 평균 총소득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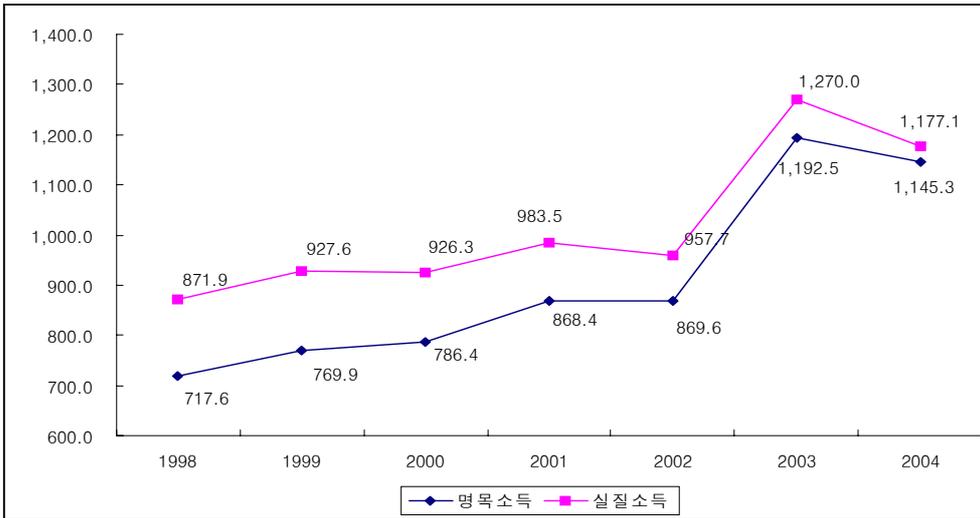
	전체 가구의 평균 총소득	단독 혹은 1세대 비노인가구의 평균 총소득	노인가구 평균 총소득	단독 혹은 1세대 비노인가구 대비 노인가구 평균소득 비율
1998(2차조사)	1,818.1	1,279.7	717.6	56.1
1999(3차조사)	1,922.6	1,419.8	769.9	54.2
2000(4차조사)	2,039.9	1,461.3	786.4	53.8
2001(5차조사)	2,533.3	1,815.5	868.4	47.8
2002(6차조사)	2,621.3	1,935.6	869.6	44.9
2003(7차조사)	2,872.6	2,126.6	1,192.5	56.1
2004(8차조사)	2,997.4	2,233.7	1,145.3	51.3

주: 가구소득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묻고 있으므로, 조사시기 전년의 소득임.
각각의 항목에 대해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계산함.

2) KLIPS 기타 소득 항목은 보험금, 퇴직금, 증여/상속금,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험금과 기타의 경우는 기타 소득이라기보다는 기타 수입이라고 판단되므로, 소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가구의 실질소득은 2004년에 1천 177만 1천원이었으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가구의 명목소득은 2004년에만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질소득은 2000년, 2002년, 2004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노인가구의 소득 추이



주: 실질소득 = (명목소득 / 소비자물가) * 100으로 산출.
 소비자물가는 2005년 = 100을 기준으로 함.

2. 노인가구의 항목별 소득

항목별 소득의 유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노인가구의 경우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8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응답이 39.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노인가구의 27.6%가 사회보험소득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단독 혹은 1세대인 비노인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88.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24.8%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보험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2%에 그쳐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단독 혹은 1세대 비노인가구의 경우 미혼자이거나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³⁾

3) 단독 혹은 1세대 가구의 평균연령은 38세이며, 가구주의 연령이 35세 미만인 경우가 53.1%에 달한다.

〈표 3〉 노인가구의 항목별 소득 유무(2004년 기준)

(단위: %)

	전체 가구	단독 혹은 1세대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근로소득	85.8	88.5	39.2
금융소득	11.4	9.2	12.9
부동산소득	9.3	3.4	16.9
사회보험소득	9.8	3.2	27.6
이전소득	41.8	24.8	83.4
기타소득	4.1	3.9	2.9

주: 각각의 항목에 대해 소득이 있는 경우의 비중임.

〈표 4〉 노인가구의 항목별 평균소득(2004년 기준)

(단위: 만 원)

	전체 가구	단독 혹은 1세대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근로소득	2,524.0	1,937.0	403.7
금융소득	35.9	16.3	45.7
부동산소득	173.7	56.3	161.7
사회보험소득	55.3	22.5	180.9
이전소득	136.9	92.6	295.9
기타소득	36.3	16.4	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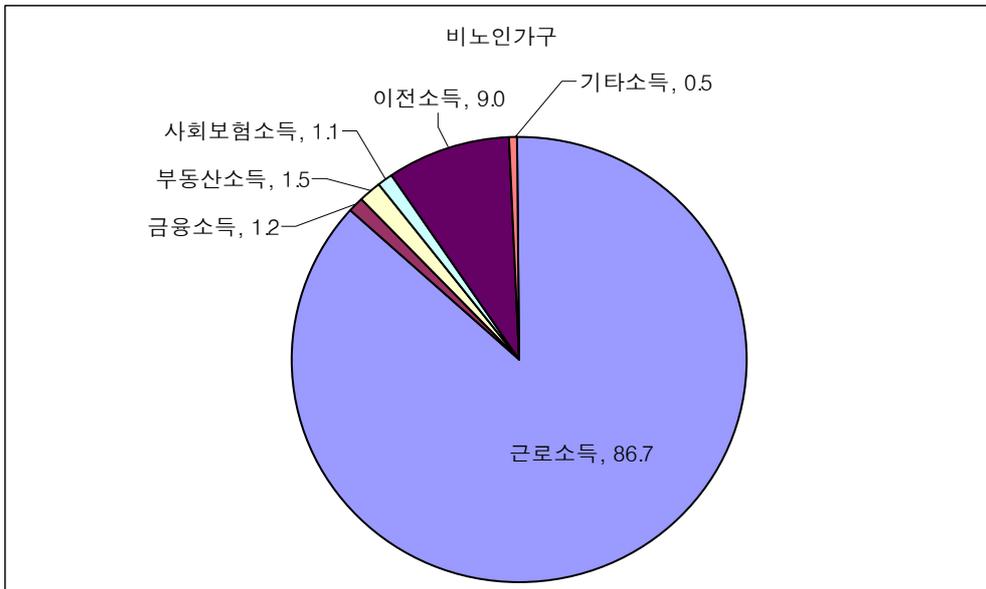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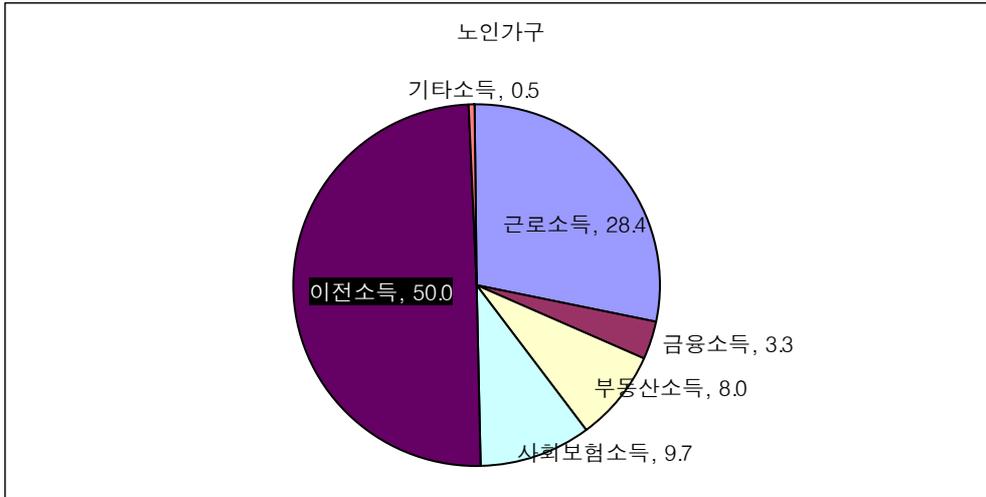
주: 각각의 항목에 대해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계산함.

항목별로 볼 때, 가구소득에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노인가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그러나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연간 403만 7천 원에 불과한데 반해, 비노인가구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1천 937만 원에 달해 그 액수가 거의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이 단독 혹은 1세대인 비노인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 가구와 비교해 보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다면 부동산소득만이 다소 낮았을 뿐 금융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인가구는 평균 이전소득이 연간 295만 9천 원으로 다른 소득에 비해 높으나, 비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은 노인가구의 1/3 수준에 머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소득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노인가구의 총소득이 현저하게 낮았던 이유가 낮은 근로소득 때문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 2]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항목별 소득 비중(2004년 기준)

(단위: %)



[그림 2]는 각 항목별 소득이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평균한 값이다. 이 그림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이전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근로소득 28.4%, 사회보험소득 9.7% 순이었다. 반면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와 8.0%에 그쳤다. 이는 단독 혹은 1세대 비노인가구에 비해서는

높은 비중이지만, 이들 자산소득이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노인가구의 경우 상당수는 이전소득에 의지해 가구 경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비노인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86.7%를 차지했으며, 이전소득은 단지 9.0%에 지나지 않았다.

가구주의 평소 취업상태에 따라 노인가구의 소득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미취업자인 경우가 취업자인 경우에 비해 사회보험소득과 이전소득에서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가구주가 미취업자인 경우에는 이전소득이 가장 주된 소득원으로 연평균 379만5천 원이었으며,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7.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구주가 취업자인 경우에는 물론 근로소득이 가구의 주된 소득원이었다. 다만 가구주가 취업자인 경우 이전소득의 액수가 미취업자인 경우에 비해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구주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가구의 취업상태에 따른 노인가구의 항목별 평균소득(2004년 기준)

(단위: 만 원, %)

	취업		미취업	
	평균소득	비중	평균소득	비중
전체	1,567.9	100.0	926.1	100.0
근로소득	1,021.6	70.6	96.2	7.5
금융소득	27.7	1.4	55.8	4.2
부동산소득	126.8	3.6	174.1	9.9
사회보험소득	124.6	6.5	206.5	11.0
이전소득	129.4	16.6	379.5	67.3
기타소득	137.9	1.2	14.0	0.1

주: 각각의 항목에 대해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계산함.
취업여부는 평소(조사일 이전 6개월간) 활동을 기준으로 함.

〈표 6〉 다른 소득 유무에 따른 이전 소득 발생여부(2004년 기준)

(단위: 개, %)

		이전소득	
		있음	없음
근로소득	있음	187 (69.3)	83 (30.7)
	없음	387 (92.6)	31 (7.4)
사회보험소득	있음	137 (72.1)	53 (27.9)
	없음	437 (87.7)	61 (12.3)

주: ()안은 행백분율을 의미함.

이에 <표 6>을 통해 노인가구에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이전소득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가구 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9.3%만이 이전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의 92.6%는 이전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가구 내에 사회보험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소득이 없는 가구는 27.9%에 달했으나, 사회보험소득도 없고 이전소득도 없는 가구의 비중은 12.3%에 그쳤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가 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들의 부양 부담이 완화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부모의 근로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항목별 소득의 구성

앞에서는 노인가구의 상당수가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에 의존해 가구경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에서는 각 항목별 소득을 좀더 세분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가. 이전소득의 종류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은 대부분 친척/친지로부터의 보조금임을 알 수 있다. 친척/친지보조금은 연평균 302만 7천에 달했으며, 전체 이전소득 중에서도 67.7%가 친척/친지보조금에 의한 것이었다. 다만, 소득 유무에 있어서는 기타 정부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7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정부보조금 수급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노인들을 위한 교통비 보조 등이 기타 정부보조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노인가구의 상당수가 기타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원은 친척/친지에 의한 보조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친척/친지보조금을 주는 주된 대상은 따로 살고 있는

<표 7> 노인가구의 이전소득 구성(2004년 기준)

(단위: 만 원, %)

	평균소득	전체 이전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	해당 소득이 없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30.4	8.3	89.4
기타 정부보조금	16.8	22.9	22.5
사회단체보조금	4.3	1.0	97.4
친척/친지보조금	302.7	67.7	24.1

주: 하나라도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함. 각각의 항목은 해당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계산함.

자녀들일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9차년도 조사부터는 친척/친지보조금을 따로 사는 부모님(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의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의 도움으로 세분하여 질문하고 있으므로, 이후부터는 좀더 풍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액수가 적을 뿐 아니라, 받고 있는 가구의 수도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사회보험소득의 종류

노인가구의 사회보험소득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구용 데이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KLIPS 가구용 자료에서는 사회보험 수급자수와 사회보험 수급자 번호, 그리고 수급액수만을 묻고 있으므로, 어떤 종류의 사회보험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KLIPS의 개인용 자료를 이용한다면 받고 있는 사회보험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KLIPS의 가구소득이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전 차수 개인용 자료와 당해연도 가구용 자료를 붙여 사용해야 한다. 즉 2004년도 사회보험소득은 8차년도(2005년) 가구용 자료와 7차년도(2004년) 개인용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7차년도 응답 개인이 8차년도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혹은 8차년도 응답 가구원이 7차년도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가구용에 응답된 개인이 개인용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본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2004년도에 사회보험소득이 있었으며 사회보험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가구는 총 146가구였다.⁴⁾

<표 8>은 노인가구가 받고 있는 사회보험소득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⁵⁾ 노인가구의 사회보험소득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민연금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노령연금의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특수직연금이 23.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수급 여부와는 달리 1회 평균 수급액은 특수직연금을 받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직연금의 1회 평균 수급액은 154만 6천에 달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9만 8천 원에 그쳐,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⁶⁾

4) 8차년도 가구용에서 사회보험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가구는 전체 노인가구 688가구의 27.6%에 해당하는 190가구였다. 여기에 7차년도 개인용에 조사된 개인을 가구용 데이터와 붙였을 경우 44개의 가구는 사회보험소득의 종류를 알 수 없었다.

5)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163개로, 총가구수 146개보다 많다. 이는 한 가구 내에서도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가 함께 사회보험을 수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각각 별개의 표본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6) 2004년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368,222원이었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작은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시작시기가 1988년으로, 현재 수급자들의 납부기간이 짧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 노인가구의 사회보험소득 종류(2004년 기준)

(단위: 만 원, %)

		빈 도	비 중	1회 평균 수금액
국민연금		102	62.5	19.8
	노령연금	82	50.3	16.3
	장해연금	3	1.8	59.7
	유족연금	7	4.3	49.7
	특례노령연금	10	6.1	23.1
특수직연금		38	23.3	154.6
산재보험		3	1.8	42.7
보훈연금		14	8.6	28.5
기타		6	3.7	59.4

주: 1회 수금액은 각각의 해당 항목에 대해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계산함.

다.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의 종류

마지막으로 노인가구의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의 종류별 특징을 알아보았다. 금융소득이 한 개라도 있는 노인가구의 대부분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은행 등 금융기관 이자나 투자소득은 연평균 340만 7천 원이었다. 또 부동산소득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월세 등의 임대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노인가구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적이며 고정적인 투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노인가구의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구성(2004년 기준)

(단위: 만 원, %)

		평균소득	해당 소득이 없음
금융소득	은행 등 금융기관 이자/투자소득	340.7	8.2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수입	12.8	95.5
	주식/채권 매매차익	0.0	100.0
	배당금	15.3	94.4
부동산소득	월세등 임대료	536.8	34.5
	부동산 매매차익	359.5	93.1
	토지를 도지준 것	50.0	71.3
	권리금	0.0	100.0

주: 하나라도 금융소득(혹은 부동산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함. 각각의 항목은 해당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계산함.

IV. 맺음말

지금까지 노인가구의 소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분석에 사용된 KLIPS 자료 내의 노인가구는 688가구로 전체의 14.2%(2005년 조사기준)이었다. 노인가구의 총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천 145만 3천 원에 그쳤다.

항목별로는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가구의 비중이 8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응답이 39.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노인가구의 27.6%가 사회보험소득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소득이 단독 혹은 1세대인 비노인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인가구는 평균 이전소득이 연간 295만 9천 원에 달해 비노인 가구의 이전소득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소득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근로소득의 격차가 가구소득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가구의 경우 이전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50%를 차지한 반면,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가구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와 8.0%에 그쳤다.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은 대부분 친척/친지로부터의 보조금이었으며, 연평균 302만 7천에 달했다. 이와 같은 사적 이전은 가구주와 따로 사는 자녀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부양은 부모의 근로여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가구주의 근로여부가 노인가구의 소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가구주가 은퇴한 이후에는 여전히 자녀 혹은 친지에 의한 부양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KLIPS**